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트리플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

2. 변경시행일 : 2020.06.02

3. 주요 정정사항 :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신탁계약서] :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③ <생 략> <신 설>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③ <현행과 같음>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<신 설>	부 칙 이 신탁계약은 2020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[(간이)투자설명서] : 운용전문인력 변경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	운용전문인력 변경	책임운용전문인력(박주호, 윤준수), 부책임운용전문인력(최재영)	책임운용전문인력(박주호, 최재영) -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	-	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윤준수→최재영),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
5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책임운용전문인력(박주호, 윤준수), 부책임운용전문인력(최재영)	책임운용전문인력(박주호, 최재영) -

<끝>.